

고 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제2023 - 688호

공공주택(행복주택) 건설사업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(정읍수정 A-1BL)

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35조 제1항 및 「주택법」 제15조 제4항에 의거 정읍수정 A-1BL 공공주택 건설(행복주택)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28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- 1. 사업명(변경없음) : 정읍수정 A-1BL 공공주택(행복주택) 건설사업
- 2. 사업시행자(변경없음)

구분	기 정	변 경	비 고
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	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전라북도 정읍시 시장 이학수	좌동	
주 소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	좌동	

3. 사업개요(변경)

구 분	기 정	변 경	비 고
가. 대지위치	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524-25, 524-20번지	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1065번지	확정측량에 따른 지번변경
나. 사업면적	3,390.00m ²	3,355.40m ²	감 34.60
다. 대지면적	3,390.00m ²	3,355.40m ²	감 34.60
라. 연 면 적	9,339.94m ²	좌동	-
마. 사업규모	아파트 1개동 (행복주택 98호, 지하1층~지상18층) 및 부대·복리시설, 업무시설(1~3층)	좌동	-
바. 구 조	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	좌동	-
사. 사 업 비	23,587,826천원 (주택도시기금 4,991,140천원)	좌동	-
아. 사업기간	2020. 12. ~ 2023. 12.	좌동	-

- 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중의 소재지·지번·면적·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: 변경없음
- 5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
 - 가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 : [붙임1] (도면생략)
 - 나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: 변경없음
- 6. 기 타 : 관계 도서는 정읍시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(063-230-6301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.

[붙임1]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1. 용도지역/지구 결정 (변경없음)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나. 용도지구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2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없음)

가. 교통시설(변경없음)

3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적(m ²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①	정읍 수성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정읍시 수성동 1065번지 일원	3,390.0	감)34.6	3,355.4	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구 역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①	정읍 수성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치 : 정읍시 수성동 1065번지 일원 • 면적 : 3,355.4m² (감34.6m²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적 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

4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가. 용도지역·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: 해당없음

나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: 해당없음

다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(m ²)		획 지			비고	
			기정	변경	번호	위 치	면적(m ²)		
							기정		변경
변경	①-1	①	3,390	3,355.4	1	정읍시 수성동 1065번지 일원	3,390	3,355.4	복합용도 (공공청사 및 공공주택, 근린생활시설)

라. 건축물에 대한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, 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5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- 게재 생략